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0. 30.(금)

# 손끝으로 확인하는 의약품 정보,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

- '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' 개정
- 장애인 정보 접근권 고려 및 실제 사용 편의성과 점자표시 품질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시각장애인**의 **의약품 정보 접근성**을 높이고, **안전한 의약품 사용**을 위해 **점자의 표시 방법** 등을 **개선**한 **「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」**을 **10월 30일 개정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**시각·청각장애인**을 위한 **의약품 표시 제도**를 **운영**하는 **과정**에서 수렴된 **장애인단체**와 **제약업계**의 다양한 **현장 의견**을 **반영**하기 위해 **추진**되었다.

먼저, **장애인**이 **누구나 필요한 의약품 정보**를 **쉽게 확인**하고 **안전**하게 **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**는 **취지**를 담아, **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**을 **관련 법령**에 **추가**하여 가이드라인의 **목적**과 **법적 근거**를 명확히 하였다.

관련 법령*에 따라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, 제약업계가 **자발적**으로 **표시**하는 **경우**에도 본 **가이드라인**을 **활용**할 수 있도록 **적용 범위**를 명확히 **안내**하였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의약품에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.

* 「약사법」제59조의2, 「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[별표2의3]

또한, **점자**의 **실제 가독성**과 **품질**을 **지속 관리**하도록 **안내**하였다. 특히 **운송·보관 과정**에서 **점자의 눌림, 마모, 탈락** 등이 **발생**하지 않는지

**모니터링**하고, **시각장애인**이 **직접 참여**하는 **가독성 검수**를 **실시**하도록 **권장**하였다. 또한, **소비자 불만 등**도 함께 **검토**하여 **반복적인 식별성 저하**가 **확인**되는 경우 **개선**하도록 하였다.

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점자를 단순히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, **시각장애인**이 실제로 **읽기 편리**한지, **유통 과정**에서도 **점자**의 **품질**이 **유지**되는지까지 고려한 **사용자 중심**의 **표시 환경**을 **조성**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**장애인단체**와 **제약업계**의 **의견**을 **지속 수렴**하여 **장애인**의 **의약품 정보 접근권**과 **안전한 의약품 사용**을 위하여 **표시 제도**를 **개선**해 나갈 계획이다.

자세한 내용은 **'식약처 대표 누리집**(www.mfds.go.kr) → **법령/자료** → **법령정보** → **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'*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| 담당 부서 | 의약품안전국<br>의약품관리과 | 책임자 | 과 장 정 호 (043-719-2651) |
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한연해 (043-719-2656) |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built 안심기준
대체불가 대한민국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